

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학칙과 경운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한다)의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연구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합·조정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기능을 한다.

제3조(사업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정관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
2. 산학연협력 연구 및 산업자문 사업
3. 산학연협력 정부지원 사업
4. 산업교육사업(직업교육훈련과정)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
5. 공용장비 활용사업
6. 경운대학교의 운영 지원 사업
7. 연구비 집행 및 중앙관리
8.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
9. 기타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

제2장 조직

제4조(단장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의 자격은 경운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타 보직과 겸직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의2(부단장)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의 자격은 경운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타 보직과 겸직할 수 있다.

제5조(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기획부, 경영지원부, 연구지원부, 기술사업부를 둘 수 있으며,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및 센터(사업단) 관리를 담당한다.

② 산학기획부는 산학연협력업무 총괄, 기획 및 조정, 산학연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,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통제, 자체 교직원 인사 및 급여 관리, 사업단 및 센터 운영지원, 산

학협력사업 홍보 및 유치 업무, 학교기업 관련 업무,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, 기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경영지원부는 각 사업단 자금지출 및 수입관리 업무, 각 사업단 구매, 제조, 용역 계약 업무, 각종 실적증명원 발급 업무,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급여 지급 관리 업무, 각종 세금 원천징수 업무, 회계 결산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④ 연구지원부는 학술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진흥 사업지원, 교내외 연구과제 지원관리,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업무,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업무, 국내외 학술회의참가경비 지원업무,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, 연구위원회에 관한 업무,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⑤ 기술사업부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업무,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, 직무 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업무, 창업교육, 창업보육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.

제6조(사업기구) ① 산학협력단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산하에 한시적 사업기구를 두며, 사업계획의 수립, 사업의 집행과 관리업무, 사업 실적보고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제1항의 사업기구에는 각 기구의 장을 둘 수 있으며, 대학내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
③ 제2항의 기구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부속, 부설기구) ① 산학협력단에는 필요에 따라 부속, 부설기구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부속, 부설기구는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7조의2(권한의 위임) ① 단장은 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사업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, 교학처장, 기획조정처장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위원의 임기는

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 및 산학협력 관련 제 규정의 개.폐에 관한 사항
3. 예.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사업의 신청.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주요사항
6. 교내외연구비, 간접경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학교기업의 설립.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8. 연구장비도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9. 지적재산권의 관한 사항
10. 교원창업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10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
 2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-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<삭제>

제4장 회계

제11조(회계관리)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‘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
제12조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. 다만, 각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관계기관의 회계연도를 따를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산학협력단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규정을 준용하며, 본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